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181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4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시행)되어 제천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인용법령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관련조항에서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관련조항으로 변경
- 인용법령중 지방재정법 “지급명령” 개정조항 정리로 조항 변경
-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기타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2. 16 ~ 2011. 3. 8(20일간)
- 다. 제 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5. 관계법령 : 붙임

-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장급(4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동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사무관 확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2. 시·군 비치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당 사무관 확인	포상금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 시·군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도지사

참 조 : 과 장

발 신 : ○ ○ 시장·군수 (인)

○ ○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 첨부 : 1. 시·군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지급대상)① 생략 1~3. 생략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7.16>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조(지급대상)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③ (현행과 같음) ④ ----- 4급 공무원</p>
<p>제3조(지급기준)①생략 1~4.생략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7. 생략 ② 생략</p>	<p>제3조(지급기준)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납세의무성립일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p>
<p>제9조(환수)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p>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8조(징수촉탁) ① 시·군세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제67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

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 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 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 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 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 ②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 차를 하여야 한다.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135(2010. 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 부터 시행되므로, 개정내용 및 개정조문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 통보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련 조례 규칙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존치(일부 문구정비)

첨부 :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4 (2011.01.03.) 접수 세정과-38 (2011.01.03.)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 220-2755 /전송 043-220-2759 / 88jumin@korea.kr / 비공개

새 지방세 분법에 따른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추진계획

□ 추진배경

- 지방세관련 3개 분법이 '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삭제·개정된 조문에 맞춰 관련조례·규칙을 개정 추진

- 지방세정의 선제적 대응으로 세정운영 혼선방지

※ 정비대상 자치법규

-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주요 개정내용

- (포상금지급조례) 4개 위원회(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1조)로 통폐합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이므로 현행과 같이 존치

- 기타 변경된 분법조문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분법안에 맞춰 관련 조례·규칙 개정추진

「○○시도(○○시군구) 세입장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장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나.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상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이므로 존치하되, 설립근거규정 일부분구정비(안 제5조제1항)

라.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시도(○○시군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시·도(○○시·군·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지방세법」 제56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로 하고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의”로 하며, 제4항중 “국장급(4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1년차의”를 “1년 경과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2년차의”를 “2년 경과한”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3년차의”를 “3년 경과한”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 소속 세입징수금소관 국 또는 본부(이하“국”이라한다)에 ○○도(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로 한다.

별지 서식은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p>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급 공무원 ----- ----- ----- -----</p>	<p>적용되는 공무원 직급만을 명시하여 도와 시군간 혼선방지</p>
<p>제3조(지급기준)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p>	<p>제3조(지급기준)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 경과한----- ----- 2. -----2년 경과한----- ----- 3. -----3년 경과한----- ----- 4. ----- ----- ----- ----- ----- 5. <u>납세의무성립일</u> ----- ----- ----- 6. ----- ----- ----- ----- ----- 7. ----- ----- ----- <p>② ----- ----- -----</p>	<p>별 지 1 호 서식과 용어 통일</p> <p>취득세로 통합, 취득일 혼선 방지</p>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p>여 지급한다.</p> <p>제4조(지급한도)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p>제4조(지급한도)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u>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 소속하에 각 국·사업소 및 본부(이하"국"이라한다)별로 ○○도(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는 소관 국장, 시군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u>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 소속 세입징수금소관 국 또는 본부(이하"국"이라한다)에 ○○도(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③ ④ ⑤ 	<p>자치단체별 1개 위원회 존치에 맞춰 조문정리</p>
<p>제6조(대장비치)①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6조(대장비치)①</p>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p>제7조(지급신청)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를 당해 ○○시·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단서의 경우 도만 적용)</p> <p>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의 경우 도만 적용)</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p>	<p>제7조(지급신청)① ----- ----- ----- ----- ----- ----- ----- (※ -----) ② ----- ----- ----- ----- ----- (※ -----) ③ ----- ----- ④ ----- -----</p>	
<p>제8조(지급)①○○도지사(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지급)① ----- ----- ----- ----- ②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 ----- -----</p>	<p>지방재정법 “지급명령” 개정조항정리</p>
<p>제9조(환수)①○○도지사(시장·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p>	<p>제9조(환수)① ----- ----- -----</p>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담당 사무관 확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호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2. 시·군 비치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당 사무관 확인	포상금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 시·군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도지사
 참 조 : 과 장

발 신 : ○ ○ 시장·군수 (인)
 ○ ○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경과					
	2년경과					
	3년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 1. 시·군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중 수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6(2011.1.5)호 및 도 세정과-14(2011. 1.3)호와 관련입니다.
2.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및 자동차세징수촉탁업무처리표준매뉴얼 첨부물중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개정 및 징수촉탁 업무처리매뉴얼 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개정(안)	수정(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안제3조제1항 (지급기준)	1. “1년 경과한” 2. “2년 경과한” 3. “3년 경과한”	1. “1년차의” 2. “2년차의” 3. “3년차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안 별지제3호 서식(“과년도체 납액징수란”)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1년차” “2년차” “3년차”
지방세운영과-5661호(2010.12.1) 로 시달된 <자동차세 징수촉탁 표 준매뉴얼> 첨부물 3쪽	- 해당가능세목 : 당 해차량에 부과한 위탁 단체의 모든 세목	- 해당가능세목 : 위 탁단체의 배당권이 있 는 모든 체납세목

붙임 :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별지 제3호 서식 변경분)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과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308 (2011.01.06.) 접수 세정과-345 (2011.01.06.)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 220-2755 /전송 043-220-2759 / 88jumin@korea.kr / 비공개

제천시 공고 제2011 -175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 월16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되어 제천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내용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인용법령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관련조항에서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관련조항으로 변경
 - 인용법령중 지방재정법“지급명령” 개정조항 정리로 조항 변경
 -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4. 개정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조
5. 개 정 안 : 별지참조
6. 입법예고 : 2011. 2 .16. ~ 2011. 03. 8(20일간)
7. 제출의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641 - 5566, FAX 641 - 5599 담당자 : 최영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실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최영진	유홍열	최남용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11-175호
3. 공고기간 : 2011.2.16 ~ 2011. 3.8(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 조회수 : 23명
 - ▷ 의견제시자 : 없음

붙 임 공고안 1부 끝.